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2.26. 김영미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2021.2.26.

다. 상정일자: 제24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1.3.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채우진 의원】

가.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추가 규정

(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제3조)

-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 장려 방안 마련
(안 제16조 신설)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추가 규정함.
 - (안 제2조, 제3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함.
 - (안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규정함.

- (안 제16조 신설)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 장려 방안 마련함.

○ 검토의견으로는

기존에 운영되던 조례에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원봉사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제2항 제4호 나목2)에 근거하

2)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활발한 나눔 활동과 자원봉사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